상임임원 복무관리요강

제정 : 2019. 8. 30
제1차 개정 : 2023. 12. 21
제2차 개정 : 2024. 2. 29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요강은 공사 상임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요강은 「한국무역보험공사 정관」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 제19조에 따른 사장, 감사, 상임이사(이하 "상임임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근무일 등) ① 상임임원의 근무일은 「취업규칙」 제12조에 따른 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.
② 상임임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「취업규칙」 제11조를 준용하되,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일·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③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근무일 이외의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④ 상임이사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유연근무제 유형, 운영방법 등은 「유연근무제 시행요령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근무지) 상임임원의 근무지는 정관 제4조에 따른 본사를 원칙으로 한다.

제2장 출장

제5조(기본원칙) ① 출장자는 출장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, 출장 중 사적 용무 등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②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, 현지 규범 · 관습을 존중하고 상임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출장) ① 상임이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·외 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위임전결규정」을 따르되, 국외출장에 관하여 「위임전결규정」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국외출장 심사요령」에 정하여진 해당 내용을 준용한다.
② 상임이사는 긴급한 상황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 승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

사후에 전결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출장자는 출장종료 후 지체 없이 근무지로 복귀하여야 하고, 상임이사의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출장관리) 상임임원의 출장은 근태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한다.

제8조(여비 지급 및 항공마일리지) 출장자의 여비 지급과 항공마일리지 관리·사용은 「여비 규정」 및 「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요령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장 휴가

제9조(휴가의 종류) 상임임원의 휴가는 연차휴가, 인병휴가, 공가, 출산휴가, 특별휴가 및 청원휴가로 구분한다.

제10조(연차휴가) ① 연차휴가 일수는 연11일로 하되, 공사 재직기간 및「인사관리규정 시행요강」별표5에 따라 환산된 경력기간을 감안하여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하며 가산일수를 포함한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1일로 한다.

② 상임임원이 연도 중에 임명된 경우, 연차휴가는 제1항의 휴가일수를 당해 연도 잔여월수만큼 월할하여 부여한다.

③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인병휴가 등) 인병휴가, 공가, 출산휴가, 특별휴가 및 청원휴가는 「인사관리규정 시행요강」에 정하여진 해당 내용을 준용한다. 다만, 동 요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병휴가는 제외한다.

제12조(휴가의 사용) 상임이사는 「인사관리규정 시행요강」제15조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고, 사장 및 감사는 주어진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13조(경영 공백의 방지) 상임임원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, 「직제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여 경영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업

제14조(영리 업무의 금지 및 겸업 허가) 상임임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업 허가 등과 관련된

사항은 「인사관리규정」 및 「인사관리규정 시행요강」에 정하여진 해당 내용을 준용한다.

제15조(외부 강의의 사전신고 등) 상임임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「임직원 행동강령」에 정하여진 바에 따른다.

제5장 기타

제16조(상임임원의 징계 및 복무관리) 상임임원의 법령 위반, 직무태만, 금품비위, 성범죄, 채용비위,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, 「인사관리규정」 및 「인사관리규정 시행요강」에 정하여진 해당 내용을 준용한다.

제17조(의원퇴직의 제한) 의원퇴직을 신청한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9조에 따른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
2. 검찰,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
3.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
4. 감사담당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

부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요강은 201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)

(시행일) 이 요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)

(시행일) 이 요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